2024년 「과학기술분야 R&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」 상반기 공고

과학기술분야 일·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촉진을 위하여 2024년 상반기 「과학기술분야 R&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03.11.

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문애리

1. 사업 목적

- □ 과학기술 R&D 분야 재직자의 출산·육아휴직, 육아기 단축근로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, 과학기술분야 일·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성화
- □ 대체인력 및 인턴연구원, 전문박사연구원 등 R&D 분야 업무경력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지원

2. 지원 분야

□ 지원 기관의 인력 조건 및 활용수요에 따라 2개 트랙, 4개 유형으로 지원

| 항 | 모 | [트랙1] 휴직·C | · 단축연구자 지원 | [트랙2] 육아기 연구자 지원 | |
|----------|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0 | | 휴직제형 | 단축제형 | 인턴연구원 | 전문박사연구원 |
| 지원 조건 | | 출산·육아로 인한 휴직자 또는 단축근무자 의 대체인력 신규채용 시 | |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위한 추가 연구인력 신규채용 시 | |
| 지 내 | 원 용 | 인 건 비 (학/석사) 2,100만원/연 | 지원 ! / (박사) 2,300만원/연 | 인건비 지원 1,000만원(약 166만원/월) | 인건비 지원 3,000만원/연(250만원/월) |
| 지 기 | | 3~15개월 3~12개월 | | 6개월 ※계속 고용시 6개월 추가 | 최대 2년 |
| 신 청 | 인 력 |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※성별 및 나이 제한 없음 출산,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| | 이공계 학·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의 여성과학기술인 | 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 를 취득한 여성과학기술인 |
| 자격 | 기 관 | | | 추가 연구인력 | 우연한 근무를 위해 채용이 필요한 야 연구기관 |
| 유의 사항 | | 지원인력 남녀무관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 | | 동등학력 인정 불가 (인턴) 시간선택제 채용 불가 (전문박사) 연구행정업무로 채용 불가 | |
| 지 규 | 원 모 | 000 | | 명 내외 | |

[※] 지원대상이 같은 경우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(중복 신청 불가)

I 지원 개요 및 신청 자격

[트랙1] 휴직 단축 연구자 지원

1. 지원 개요

- □ 지원 내용 : 출산 또는 육아에 의한 휴직·근로시간 단축 연구자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
 - 인거비 지원 : 대체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
 -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, 신청 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 하여 **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**

| 구분 | 학·석사 | 박사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정부지원금 | 2,100만원/연(175만원/월) | 2,300만원/연(약 191.6만원/월) |
| 기준연봉 | 3,000만원/연 | 3,300만원/연 |

- ※ 기준연봉 산정방법: (기본급 + 월정액수당, 퇴직금 제외) × 12개월(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름)
- ※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. 이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[참고1] 확인
- 교육훈련 : 지원인력의 연구역량 또는 경력개발 교육 참여(연 1회 필수) ※ 교육 내용 및 일정은 지원 인력 대상 별도 안내 예정

□ 지원 조건 및 유형

① 휴직제형 : 출산, 육아, 가족돌봄, 건강 등의 사유로 **휴직제도를 사용한 연구자**가 있는 경우

※ 휴직제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- 지원시작일(2024.06.01.) 기준 휴직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
- 휴직자 및 지원인력의 4대 보험 가입 및 유지
- 지원인력의 출퇴근 관리 필수(월별 관련 증빙자료 제출)
- 인수인계기간 및 휴직기간 중 지원인력의 고용형태는 변함없이 유지
- ※ 교육, 장기출장, 학업 등 자기개발 혹은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목적으로 휴직제도를 사용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

② 단축제형 : 임신, 육아, 가족돌봄, 건강 등의 사유로 **근로시간 단축제도를** 사용한 연구자가 있는 경우

※ 단축제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- 지원시작일(2024.06.01.) 기준 단축제도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
- 단축제 사용자의 단축기간 중 근로시간 : 주 15~35시간, 연장근무 월 20시간 이내
- 단축제 사용자 및 지원인력의 4대 보험 가입 및 유지
- 단축제 사용자 및 지원인력의 출퇴근 관리 필수(월별 관련 증빙자료 제출)
 - 과제 수행 중 출퇴근 점검 결과 이상 발생 시 지원 취소 또는 협약 해약
- 인수인계기간 및 단축기간 중 지원인력의 고용형태는 변함없이 유지
- ※ 교육, 장기출장, 학업 등 자기개발 혹은 지원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목적으로 단축 근로제도를 사용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
- □ 업무 분야 : 연구직, 기술직, 연구행정직 등 연구개발 관련 업무 수행
 - ※ 휴직자(단축근무자)와 지원인력의 소속부서가 다르더라도 신청가능하나 근무지는 동일 해야하며,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함
- □ 지원 시작일 : 2024.06.01.
- □ 지원 기간 : 최대 15개월(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)

| 구분 | ① 휴직제형 | ② 단축제형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전 인수인계기간(A) | 0~2개월 | 0~2개월 | |
| 휴직 또는 단축제 사용기간(B) | 3~15개월 | 3~12개월 | 총 지원기간은 A, B, C 안에서 |
| 사후 인수인계기간(C) | 0~2개월 | 불가 | 조정 가능 |
| 총 지원기간(A+B+C) | 3~15개월 | 3~12개월 | |

- ※ 지원금은 학·석사 175만원/월, 박사 191.6만원/월 기준으로 지원 기간만큼 지급됨(예시) 석사가 15개월 근무 시 175만원 × 15개월 = 2,625만원
- ※ 지원 시작일 이전의 휴직(단축근로)기간은 지원기간에 포함되지 않음
- ※ 지원 시작일 이전에 휴직(단축근로)이 시작된 경우 이전의 휴직(단축근로)기간에 대해 지원되지 않으며(소급적용 불가), 사전 인수인계기간 해당없음
- ※ 지원 기간 예시

| 유형 | 휴직(단축근무)기간 | 사전 인수인계 기간 | 사후 인수인계 기간 | 지원(협약) 기간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휴직 | 2024.04.01~2025.05.31 | 해당없음 | 2025.06.01.~2025.07.31 | 2024.06.01.~2025.07.31 (총 14개월) |
| 단축 | 2024.08.01.~2025.07.31 | 2024.06.01.~2024.07.31 | 불가 | 2024.06.01.~2025.05.31. (총 12개월) |

2. 신청 자격

□ 지원 인력

- **이공계 학사 이상** 학위 또는 동등학력(참고2) 소지자
 - ※ 이공계 학위 판단 기준은 [졸업증명서]에 명시된 "이학학(석/박)사" 또는 "공학학(석/박)사" 등
 - ※ 의·약학, 치의학, 산업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(단, 수행업무가 R&D 관련 업무이어야 함)
 - ※ 성별 및 나이 제한 없음
 - ※ 수료자는 해당 학위 취득자로 불인정
- 2024.01.01. 이후 신규 채용(예정)자
 - ※ 채용 예정자는 지원 시작일(2024.06.01.) 이전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시작해야 함
- 지원 인력은 연구직, 기술직, 연구지원직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수행

----- < 업무 내용 예시 > -----

- 기초연구, 기술 및 제품 개발, S/W 개발, 산업디자인, 특허 조사·분석, 시장 기술조사
- 연구장비·기자재 운용, 설계, 도면의 작성, 가공·조립, 실험·검사·측정
- 전문적 연구지원, 정보 가공·분석, 특허출원
- 시제품 설계 시험·제작. 기술마케팅. 기술영업. 기술협력 등
- 연구행정 업무

□ 지원 기관

○ R&D분야 재직자 중 출산,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(예정)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(예정)자가 있는 **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**

▽──── <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(어느 하나 해당 시) > ▽────
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
-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
-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이노비즈)
- 「연구산업진흥법」제2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
-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
- 지원기관 부서별 인력 1명 지원
 - ※ 부서는 기관의 조직도에서 가장 하위조직을 기준으로 하며, 연구·기술개발 업무수행 부서에 한함

[트랙2] 육아기 연구자 지원

1. 지원 개요

- □ 지원 내용 : 육아기 연구자가 있는 연구팀에서 원활한 연구를 위한 인력을 인턴 또는 전문박사연구원으로 신규채용 할 경우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
 - ※ <u>육아기 연구자</u>란? 만 **8세 이하** 또는 **초등학교 2학년 이하** 자녀를 둔 <u>남녀</u> 연구자로 휴직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, 단축근무 사용 여부 무관
 - **인건비 지원** : 인턴 또는 전문박사연구원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
 -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, 지원 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 하여 **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**

| 구분 | ①인턴연구원 채용 시 | ②전문박사연구원 채용 시 |
|-------|---|--|
| 정부지원금 | 1,000만원(약 166만원/월) | 3,000만원/연(250만원/월) |
| 지원기간 | 2024.06.01. ~ 2024.11.30.(6개월) ※ 인턴 계약기간 종료 후 고용 전환하여 계속 고용 시 <u>6개월 추가 지원</u> | 2024.06.01. ~ 2025.05.31.(최대 2년) ※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결정 |
| 기준연봉 | 해당없음 | 4,500만원/연 |
| 지원조건 | 이공계 학·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여성과학기술인 | 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 한 여성과학기술인 |
| 시간선택제 | 시간선택제 채용 불가 |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 |

- % 기준연봉 산정방법 : (기본급 + 월정액수당, 퇴직금 제외) \times 12개월(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름)
- ※ 전문박사연구원 시간선택제 채용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[참고1] 확인
- **교육훈련** : 지원 인력의 연구역량 또는 경력개발 교육 참여(연 1회 필수) ※ 교육 내용 및 일정은 지원 인력 대상 별도 안내 예정
- □ 업무 분야 : 연구직, 기술직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 시 지원 ※ 인턴연구원에 한하여 연구행정 업무 수행 가능

2. 신청 자격

□ 지원 인력

- 2024.01.01. 이후 신규 채용(예정)자
 - ※ 채용 예정자는 지원 시작일(2024.06.01.) 이전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시작해야 함
- 인턴연구원 : 이공계 학사·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(공고일 기준)의 여성과학기술인
 - ※ 박사 학위소지자는 제외하며, 동등학력 인정 불가
 - ※ 2024년 3월 졸업예정자 인정(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수)
- 전문박사연구원 : 이공계 분야 **박사 학위를 취득한 여성과학기술인**
 - ※ 박사 학위 취득 연도는 관계 없으며, 동등학력 인정 불가
 - ※ 박사 학위 수료자, 졸업예정자, 비이공계 박사 학위 취득자 제외
- 지원 인력은 연구직, 기술직, 연구지원직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수행

---- < 업무 내용 예시 > ----

- 기초연구, 기술 및 제품 개발, S/W 개발, 산업디자인, 특허 조사·분석, 시장 기술조사
- 연구장비·기자재 운용. 설계. 도면의 작성. 가공·조립. 실험·검사·측정
- 전문적 연구지원, 정보 가공·분석, 특허출원
- 시제품 설계 시험·제작, 기술마케팅, 기술영업, 기술협력 등
- 연구행정 업무(인턴연구원에 한함)

□ 지원 기관

○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한 근무를 위해 추가 연구인력 채용이 필요한 **과학기술** 분야 연구기관

------ <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(어느 하나 해당 시) > ---
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
-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
-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이노비즈)
- 「연구산업진흥법」제2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
-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
- 연구팀* 당 인턴·전문박사 연구원 각 1명까지 지원 가능
 - * 연구팀 : 기관 내 연구(프로젝트) 수행 단위 기준

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1. 신청 방법

- □ 신청 기간 : 3월 11일(월) ~ 4월 30일(화) 17:00
 - ※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□ 신청 방법: W브릿지 사이트(www.wbridge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
- □ 신청 조건 : 채용(예정) 인력을 확정하여 기관과 인력이 함께 신청
 - ※ 인력과 기관 모두 신청해야 함(**인력은 개인회원** 아이디로 가입·로그인하여 인력의 제출서류 업로드, **기관은 기업회원** 아이디로 가입·로그인하여 기관의 제출서류 업로드). **인력과 기관 중 한 쪽만 신청한 경우** <u>탈락</u>
 - ※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기관-인력 간 매칭을 위하여 W브릿지 이용 가능(별첨 확인)

2. 제출 서류

□ 지원 인력

| 구분 | 제출서류 | 제출 시 유의사항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|
| 1 | 사업신청서 | - W브릿지(www.wbridge.or.kr)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(서명 및 직인 필수) | |
| 2 | 졸업증명서 사본 | - 최종학위에 대해서만 제출 -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| |
| 4 | 정부 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(참고5 확인) | - 워크넷(www.work.go.kr)에서 발급 ※ 마이페이지 → 온라인 신청관리 → 정부지원 일자리 → 일자리 참여내역 → 신청기간 포함하여 검색 후 본인 이름이 나온 캡쳐본 제출(전체화면 캡쳐) - 사업신청일 포함하여 검색 후 신청 이력의 유/무와 관계없이 제출 - 조회기간 최소 3개월 이상(사업신청일 포함) | 필수 |
| 5 | 경력증명서 | -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이력사항에 대하여 제출 ※ 학사(전문학사), 비이공계 석·박사의 경우 필수 ※ 이전 재직 기관에서 발급받은 문서만 인정 | 해당 |
| 6 | 기타 | - 본인의 역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- 동등학력 인정 필요시(트랙1 지원 인력만 해당) | 시 |

□ 지원 기관

| 구분 | 제출서류 | 제출 시 유의사항 | 비고 |
|----|---|--|---------|
| 1 | 사업신청서 | - W브릿지(www.wbridge.or.kr)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(서명 및 직인 필수) | |
| 2 | 사업자등록증 사본 | - | |
| 3 |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,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, 벤처기업확인서, 이노비즈 확인서, 연구소기업 등록증,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(구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) 등 | - 해당 내용 중 택1 ※ 공공연, 대학 제외 ※ 신청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불인정 | 필수 |
| 4 |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| - 2021~2023년 공시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※ 국세청 또는 회계사(세무사) 확인(원본/날인) - 2023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020~ 2022년 재무제표 제출 ※ 공공연, 대학 제외 | |
| 5 | 가점 증빙서류 | -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- 가족친화인증서 사본 -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- 우수기업연구소 인정서 사본 ※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거나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불인정 | 해당 시 |
| 6 | 휴직·단축근로 증빙서류 | - 휴직·단축근무 사유별 증빙서류 (기관 신청서 확인) | 해당 시 |

3. 신청 시 유의사항

| 기관과 | 인력 | 모두 사업 | 신청을 | 완료해야 | 함 |
|-----|----|-------|-----|------|---|
| | | | | | |

- □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
- □ 고유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 등)는 비식별처리하여 제출
- □ 날인이 없는 서류는 불인정 처리

4. 문의처

- □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R&D경력복귀지원팀
 - 02-6411-1072, jksim@wiset.or.kr / 02-6411-1064, cmh125@wiset.or.kr

Ⅲ 평가 방법 및 기준

1. 평가 방법

- □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하여 요건심사(재무건전성 평가) 및 전문가 평가를 시행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□ 전문가 평가결과 60점(100점 만점) 미만 탈락, 재무건전성 평가결과 5점 이하(20점 만점) 탈락

2. 평가 기준

- □ 요건심사: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기본 자격요건 및 재무건전성 심사
 - 신청자격 부합성, 참여제한 여부,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헙여부 등 검토
 - 신청기관이 민간기업인 경우,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재무건전성 평가 실시
- □ 전문가평가: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서면평가
 - [트랙1] 휴직·단축 연구자 지원

| 평가항목 | | 평가지표 | 배점 |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|--|
| | 기관 역량 | - R&D 수행규모 및 R&D 투자의 우수성 - R&D 수행 성과의 우수성 등 | 20 | |
| 기관 평가 | 인력활용 계획 | - 대체인력 활용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- 사업을 통한 지원 사유의 타당성 - 휴직자/단축근로자와 대체인력간 업무 연관성 | 20 | |
| | 근로환경 | - 근무여건의 우수성(인건비, 복지제도) 등 - 인력의 고용안정성 확보 계획 | 10 | |
| | 지원 필요성 | -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신청 동기 - 대체인력 사업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하는 필요성 | 20 | |
| 인력 평가 | 업무역량 | - 지원 희망분야와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의 연관성 - 전공 분야 및 기존 경력의 부합성 | 20 | |
| | 역량개발 계획 | - 지속적인 경력 및 역량개발 포부 및 계획 - 인력의 R&D분야 발전 가능성 | 10 | |
| 합계 1 | | | | |

○ [트랙2] 육아기 연구자 지원

| 평. | 가항목 | 평가지표 | 배점 | |
|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|
| | 지원의 | - 인력 활용 지원 필요성 | 15 | |
| | 필요성 | - 인력양성 및 활용계획의 타당성 | 10 | |
| 기관 | 인력활용 | -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기대효과 | 15 | |
| 평가 | 계획 | - 육아기 연구자와 인턴/전문박사 연구원간 업무 연관성 | 10 | |
| | R&D 인력 | - 기관의 연구개발 성과 및 실적의 우수성 | 20 | |
| | 활용 인프라 | - 근무여건의 우수성(인건비, 근무시간, 복지제도) 등 | 20 | |
| | 업무역량 | - 담당 업무(연구분야)와 전공 일치도 및 기존 경력의 부합성 | 30 | |
| 인력 | нт ¬ о | - 지원 희망분야와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의 연관성 | 50 | |
| 평가 | 역량개발 | - 지속적인 경력 및 역량개발 포부 및 계획 | 20 | |
| | 계획 | - 인력의 R&D분야 발전 가능성 | 20 | |
| 합계 | | | | |

○ 우대가점: 트랙1 · 2 동일 적용

| 평가항목 | 평가지표 | |
|--------|--|---|
| | 기관이 여성기업인 경우 | 1 |
| | 기관이 지방(서울, 경기, 인천 외의 지역)기업인 경우 | 1 |
| | 기관이 가족친화인증기관인 경우 | 1 |
| | 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| 1 |
| 71.71 | 기관이 우수기업연구소 선정 기업인 경우 | 1 |
| 가점 |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(예정)인 경우 | |
| | ※ 신청 시 정규직 채용(예정)으로 신청했으나 추후 협약 또는 사업수행 중 정규직 채용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| 2 |
| | 과학기술분야 R&D 대체인력 채용 지원사업으로 채용한 대체인력이 사업종료 후에도 고용유지 중인 기관 | 1 |
| 합계 | | |

3. 평가 결과 : 선정 공고문 게시 및 개별 통보(이메일 발송)

4. 결과 발표 및 향후 일정(안)

□ 선정공고 게시일 : 2024.05.20.(월)

□ 선정자 대상 협약체결 안내 : 2024.05.21.(화) ~ ※ 진행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IV 기타 유의사항

- 사업기간 동안 휴직자(단축제 사용자), 육아기 연구자의 고용이 보장되어야 함
- 채용한 지원 인력의 4대 보험 및 퇴직금(12개월 이상 채용 시) 필수
- 지원기관은 신청 자격을 상시 유지하여야 함
- 정부지원금은 지원 인력의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
- 사업의 수혜를 받은 지원 인력 및 기관은 지원종료 후 2년까지 인력의 경력 현황에 대한 육성재단의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
- 협약 진행 중, 협약 체결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함
 - 신청 제외대상 기관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,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, 기관 및 인력의 신청자격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등
 - 이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휴직자(단축제 사용자) 및 육아기 연구자가 퇴사하는 경우, 사업 협약은 유지됨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-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인력은 상호간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, 기관은 인권경영 이행 및 조치에 협조해야 함
- 지원기관 및 인력은 선정평가의 절차 및 결과(종합의견)에 대하여 1회에 한해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
- 인턴·전문박사연구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을 육아기 연구자로서 사업 신청 불가
- 협약기간 중 지원 인력의 퇴사 등의 사유로 협약 지속이 불가할 경우, <u>1회</u>에 한하여 신규 채용한 인력으로 교체 가능
 - ※ 교체하고자 하는 인력은 기존 지원 인력의 퇴사 이후 신규 채용한 인력으로 교체 가능
 - ※ 최초 지원금과 총 지원기간은 변경 불가
 - ※ 인턴연구원의 경우 지원 인력 교체 불가
- 본 사업은 연구비 6천만원 이하의 인력양성 사업으로 '3책5공' 적용 예외사업임

○ 지역 위탁 운영 안내

- 2024년부터 「과학기술분야 R&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」의 지역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과제 운영 관리를 지역 거점 기관에 일부 위탁 예정
- 따라서 WISET 외 충청권, 호남권, 영남권역의 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인접 기관의 과제 관리 위탁 실시
- 지역 위탁 기관에서 관리할 과제는 선정 공고 시 해당 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이며, 관리 기관이 다를 뿐 사업의 운영내용은 동일

정부지원금 산정 안내

□ 정부지원금 지원 금액: 학·석사 2,100만원/연, 박사 2,300만원/연

- 지원 기관은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, 지원 인력에게 정부지원금 을 포함하여 **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**
 - 정부지원금 : 기준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(1년 기준)
 - 기준연봉 : 기관이 본 사업 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최소연봉(기준연봉 초과 가능)

< 협약기간 12개월 기준 정부지원금 산정 금액 >

| 구분 | 학・석사 | 박사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정부지원금 | 최대 2,100만원/12개월 (175만원/월) | 최대 2,300만원/12개월 (191.6만원/월) |
| 기준연봉(전일제) | 3,000만원/연 | 3,300만원/연 |

- ※ 기준연봉 산정방법: (기본급 + 월정액수당, 퇴직금 제외) × 12개월
- ※ 정부지원금의 경우, 학·석사 175만원/월, 박사 191.6만원/월 기준으로 지원기간(협약기간)만큼 계상하여 지급됨

(예시) 석사 6개월 근무 시 175 × 6개월 = 1,050만원, 석사가 15개월 근무 시 175 × 15개월 = 2,625만원

□ 시간선택제 채용의 경우(육아기 연구자 지원 중 <u>인턴연구원 채용시 불가</u>)

- 지원 인력은 시간선택제로 채용 가능하며, 이 경우 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산정
 - ①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 ≥ 기준연봉 ➡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
 - ※ (예시) 시간선택제 채용자 A(석사)의 연봉이 3.200만원일 경우
 - → 석사의 기준연봉이 3.000만원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이 기준연봉보다 높음
 - → 정부지원금 2,100만원 전액 지급
 - ②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 < 기준연봉 ➡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

| [][][][] | 시간선택제 근무 시 연봉 저브지의그 저애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[계산역] | 전일제 근무 시 연봉 시장무시된 전투 | |

- ※ 전일제 근무시 연봉은 지원기관의 인사기준 및 경력을 산정하여 기관에서 자체 결정 ※ (예시) 시간선택제 채용자 B(박사)의 연봉이 2,800만원일 경우
 - (전일제 근무시의 연봉은 3,500만원)
 - → 박사의 기준연봉이 3,300만원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이 기준연봉보다 낮음
 - $\rightarrow \frac{\text{시간선택제 근무 시 연봉}}{\text{전일제 근무 시 연봉}} \times \text{정부지원금 전액} = \frac{2,800만원}{3,500만원} \times 2,300만원 = 1,840만원$ (전일제 근무시의 연봉은 지원 기관에서 확인)

신청 자격요건

□ (인력) 동등학력 인정 요건(<u>트랙1</u>. 휴직·단축 연구자 지원만 해당)

-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「국가기술자격법」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·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자
-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「국가기술자격법」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·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,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자
-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과학기술분야 연구직·기술직 등의 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
- 비이공계 학위 소지자로서(학·석·박사) 과학기술분야 연구직·기술직 등의 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
- ※ 상기 동등학력 인정 요건은 트랙2. 육아기 연구자 지원은 적용되지 않음

□ (기관)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

제6조(기초연구사업의 추진)

-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- 2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- 3.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및 기술대학
- 4. 국공립연구기관
- 5.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
제14조(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)

- 1.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
- 2.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
- 3.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- 3의2. 「협동연구개발촉진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
- 4. 「나노기술개발 촉진법」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
- 5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
- 6.「의료법」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
- 6의2.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
- 7. 그 밖에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

신청 제한 사항

□ 기관 제한 사항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에 의하여 국가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
- 임금체불, 노동법 위반 등 2회 이상 **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**한 기관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「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」 제20조 1항에 의한 '신청제외 기관'에 해당하는 경우(비영리기관 제외)

< 신청제외 기관 >

- 1. 기업의 부도
- 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 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)
- 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)
- 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
- 5.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
- 6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
□ 인력 제한 사항

-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(중복지원 불가)
 - ※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 확인 : 워크넷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온라인 신청관리 → 정부지원 일자리 → 일자리 참여내역 → 신청기간 포함하여 검색
 - ※ 교육훈련 참여 및 참여기간이 종료된 건은 중복에 해당하지 않음
- 동 사업(과학기술분야 R&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)으로 기 지원 받은 자 ※ 동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자 및 조기 종료, 협약해약,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 포함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- 학위과정 중인 자 신청불가
- 제재조치 등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
- 신청기관의 기관장(사업주), 기관장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등기이사 ※ 사업기간 중 친족관계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
 - ※ 대체인력, 인턴·전문박사연구원, 휴직자, 단축근로자, 육아기 연구자 모두 참여 불가

< 친족관계>

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 제1항】

- 1. 6촌 이내의 혈족. 2. 4촌 이내의 인척
- 3.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)
- 4.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

사업 연간일정

| 절차 | 내용 | 수행주체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| |
| 사업 공고 | · 신규 지원기관 및 인력 모집 공고 | WISET |
| + | | |
| 사업 신청 | · 신청서 접수(온라인) · www.wbridge.or.kr | 지원기관 및 인력 |
| 1 | | |
| 적격성 평가 및 선정 | · 선정결과 및 승인 통보 | WISET 평가위원단 |
| 1 | | |
| 협약체결 | · 지원기관에서 WISET에 신청 | 지원기관 |
| 사업비 지급 | ·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급 | WISET |
| 1 | | |
| | · 지원기관의 인력활용 및 사업수행 | |
| 사업 수행 | · 대체인력의 연구개발 수행 등 | 지원기관 및 인력 |
| | · 대체인력 및 휴직자 대상 교육 실시 | |
| 1 | | |
| 중간 · 현황점검 및 | · 사업수행 중간·현황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 | WISET |
| 현장점검 | | |
| 1 | | |
| 사업비 정산 | · 사옹실적보고서에 대한 회계정산 실시 | WISET |

※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관련하여 별도 안내 예정

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(예시)

